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99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유용원 · 진종오 · 김미애
김소희 · 김성원 · 이현승
김 건 · 성일종 · 윤영석
강선영 · 박상웅 · 한동훈
이진숙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가상각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단순한 감가상각의 기준뿐만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내용연수가 실제 운용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고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비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이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

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군수품 관리의 합리성과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수품 중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내용연수) 국방부장관은 감가상각(減價償却)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1조(내용연수) ① ----- ----- ----- ----- ----- 이 경우 군수품 중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u><신 설></u>	